여해법률사무소
137-88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403호 (서초동, 화평빌딩)
T 02.537.4455 F 02.537.2372 E info@leesunsin.com

위자료 및 재산분할 합의서

갑 (-)

주 소

을 (-)

주 소

위 갑과 을은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

다 음

1. 갑은 2019년 월 일 까지 을에게 위자료로 금 만원을 지급한다.
2. 갑은 2019년 월 일 까지 을에게 재산분할로서 금 만원을 지급한다.
3. 갑이 위 일시에 위 각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을에게 그 다음날부터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.

2018년 월 일

갑

을